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537호, 2019. 8.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닭·오리 등의 가금류는 소·돼지에 비해 사육기간이 짧아 사육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바, 가금농장의 입식(入殖)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여 사육정보를 신속하게 현행화함으로써 가금농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질병 확진 이후에야 발령이 가능하여 초기 방역에 한계가 있는바,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닭, 오리 등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하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5조의2 신설).
- 나.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또는 간이진단키트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경우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법제처 제공〉

◆ 개정문

◎ 법률 제1653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 닭, 오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과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식용란의”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및 식용란의”로 한다.

제17조의6제1항제4호 중 “입식(入殖) 및”을 “입식 및”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축 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또는 간이진단키트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경우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3.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60조제1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